

# 국제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 규칙에 관한 UNCITRAL의 논의와 그 평가\*

- 제26차 실무작업반의 논의를 중심으로 -

Discussion and Evaluation in UNCITRAL Regarding  
Procedural Rules for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 Focused on the Discussion in the 26th Session of  
Working Group III -

이 병 준\*  
Byung-Jun Lee

## 〈 목 차 〉

I. 서론	IV. 논의의 정리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II. 중재단계와 관련된 규정	참고문헌
III. ODR 절차의 언어와 그 확정방법	Abstract

주제어 : 국제전자상거래, 온라인 분쟁해결, UN상거래법위원회, 절차규칙, 절차언어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NRF-2011-327-B00796).

\*\*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서론

온라인을 통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그 계약체결 매체가 온라인이었다는 측면에서 그 분쟁의 해결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명제처럼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계약이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진 국제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그 장소적 거리로 인하여 더욱더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절차가 더 바람직하고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기술적·법률적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으나,<sup>1)</sup> 이로 인한 분쟁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법률이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sup>2)</sup> 물론 부분적으로 ICANN<sup>3)</sup>처럼 이를 완전히 실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여러 대체적인 분쟁해결(ADR)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 존재하나, 모두 조정에 머물고 있고 이에서 발전한 완전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ODR)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중재절차를 제공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은 온라인으로 분쟁해결을 하는 ODR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최근 유엔상거래법위원회에서는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 B2B와 B2C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액의 대량 피해사건을 다룰 수 있는 온라인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에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III는 제22차 회의를 기점으로 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sup>4)</sup> 최근 2012년 11월에 26차 회의가 열렸다.<sup>5)</sup> 본 26차 회의에서는 상당 부분의 회의가 비정규회를 통하여

- 1)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소소비자보호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경우 분쟁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완전한 ODR제도를 입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3)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www.icann.org](http://www.icann.org).
- 4) 25차 회의까지의 기본적 시각과 전반적 논의사항에 관하여는 Michael J. Dennis, "UNCITRAL ODR", 『외법논집』 제36권 제4호, 2012, p. 25 이하;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과 ODR를 통한 분쟁해결", 『중재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2, 8, p. 79-101. 그밖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2011년에 다수의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손승우,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 [I] - ODR에 관한 국제규범 동향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1; 이준호,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 [II] - CWA ODR 표준화 가이드라인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1; 오수근,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 [IV] - UNCITRAL ODR Working Group 논의 내용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1; 손현,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 [V] - 국내 ODR 규율 동향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1; 손현 · 이병준,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 [VI] - ODR에 관한 국제규범모델 정립을 위한 제언」, 한국법제연구원, 2011; ODR 연구포럼,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 [VII] - ODR 연구 포럼 Report」, 한국법제연구원, 2011.
- 5) 26차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 중 중재절차와 관련된 기본적 논의에 관하여는 이병준, "국제전자상

진행되었고,<sup>6)</sup> 조문에 대한 검토는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이 논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본 논문을 통하여 UNCITRAL에서의 논의된 내용 중 검토된 2개의 조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중재단계와 관련된 규정

### 1. UNCITRAL 논의에서 ODR 절차상 중재단계가 갖는 의미

#### (1) 3단계 패키지모델에서 탄력적인 2개의 트랙병존 모델로

2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부터 UNCITRAL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패키지 모델을 지향했었다. 즉, 협상(negotiation), 촉진된 합의(facilitated settlement) 및 중재(arbitration)라는 3단계를 ODR 제공자가 모두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이 절차는 신속, 저렴하면서도 완전한 분쟁해결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인 협상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촉진된 합의단계로 넘어가고, 여기서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단계인 중재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ODR 제공자 내지 당사자들이 어느 한 단계를 임의적으로만 선택하거나 절차에서 하나의 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협상의 단계에서는 ODR 제공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ODR 플랫폼에서 당사자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한 합의가 이루지는 단계이다. 촉진된 합의단계와 중재단계에서 비로소 중립적 제3자(neutral) 1명이 개입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가 두 단계에게 관여한다. 촉진된 합의단계에서는 중립적 제3자의 도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 중재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중재단계에서는 중립적인 제3자의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 열린 26차 실무작업반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격적인 변화가 있었다. 즉, 3단계 패키지 모델이 부분적으로 포기되었고, 중재절차를 원하지 않은

거래 분쟁에 대한 온라인 분쟁해결과 중재”, 「중재」, 제338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12. pp. 50-55.

6) 기존 의장이었던 이화여대의 오수근 교수가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의장 하에서 회가 진행되었으나, 많은 회원국들은 중요쟁점을 비정규회를 통하여 합의하려고 하였다. 비정규회의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 및 중재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 분쟁에 대한 온라인 분쟁해결과 중재”, 「중재」, 제338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12. pp. 50-55.

나라의 요구를 반영하여 2단계 모델과 3단계 모델을 구분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기본적으로는 (1) 협상/조정 단계로 구성된 절차와 (2) 협상/조정/중재 단계로 구성된 절차가 인정되어 2개의 트랙병존 모델(two pathway model)이 제안되었다. 이는 3단계의 패키지 모델보다는 2개 내지 더 다양한 분쟁해결절차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더 탄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7)</sup>

기본적으로 현재 ODR 절차규칙은 계약법적 성격(contractual nature)을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sup>8)</sup> 동 절차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2단계 모델 또는 3단계 모델 중에서 어느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선택할 것이다. 그렇지만 당사자는 주로 ODR 절차를 제공하는 ODR 제공자의 결정을 통하여 하나의 모델을 선택할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ODR 제공자가 어느 모델을 취하여 제공하는 것인지가 결정적일 것이다. 물론 ODR 제공자는 각 모델 중의 하나만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두 모델 모두 함께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두 번째 트랙에서 최종단계로서의 중재

결국 현재 UNCITRAL 논의에서 중재는 두 번째 트랙에서 3번째인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째 트랙의 존재를 원하는 국가들(미국 등)은 완전한 중재를 제도적으로 만들 것을 원한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는 타당한 시작으로 중재판정은 종국적이고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더 나아가서 집행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중재에서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다른 국가들(유럽연합국가 등)은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중재를 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sup>9)</sup>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 중재에 관련된 규정의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주의하면서 이 논의를 이해하여야 한다.

## 2. 제26차 실무작업반에서의 논의

### (1) 초안 제9조 ([결정][판정]의 [발표][통지])<sup>10)</sup>

7)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15 (A/CN.9/762).

8) 계약법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법 절차규칙이 협약 내지 가이드라인의 형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규범으로서 분쟁당사자들인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9)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14 (A/CN.9/762).

10) 본 조문을 읽을 때 [ ]에 있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며, 논의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

초안 제9조 원안

1. 독립적 제3자는 [결정][판정]을 [즉시][지체없이] 내려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들이 독립적인 제3자 측에 최종 제출을 한 날로부터 7역일(연장 가능한 추가적인 7역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ODR 제공자는 [결정][판정]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결정][판정]의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없다.
2. [결정][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며,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서명되고, 이 문서가 작성된 날의 날짜와 [결정][판정]의 간략한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3. [결정][판정]은 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인 것이며 이에 구속된다. 당사자들은 [즉시] [결정][판정]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4. [결정][판정]을 수령한 후, [5]역일 내에,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독립적인 제3자에게 [결정][판정]의 계산, 사무, 인쇄에 있어 오류 [또는 비슷한 성질의 어떤 오류나 누락]를 수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독립적인 제3자가 그 청구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청구를 수령한 후 [간단한 수정의 이유의 진술을 포함하여] [2]역일 내에 수정한다. 그러한 수정은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며,] [결정][판정]의 일부를 형성한다.
5.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독립적인 제3자는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하면서 계약의 용어와 부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또한 당해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거래관행을 참작하여야 한다.]
6.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나 방어를 위한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실무작업반 논의사항

1) 제9조 제1항

① ‘판정(award)’ vs. ‘결정(decision)’의 문제

중재인이 중재단계에서 하는 최종판단을 통상 중재판정, 즉 ‘award’라고 한다. 이러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UNCITRAL 중재규칙 및 모델법에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중재를 원하는 국가들은 당연히 ‘award’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UNCITRAL의 기존규범과의 연결성, 특히 집행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더욱이 2트랙모델에서 두 번째 트랙에서 마지막 단계인 중재는 완전한 ‘award’로서의 내용과 효력을 가져야 한

는 쟁점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물론 아직 확정된 조문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 ] 속에 있지 않은 사항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비자중재에 관하여 의문점을 갖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 두 가지 트랙을 더 정교하게 만들 때까지 어느 용어를 사용할지를 확정하지 말고 당분간 두 용어를 [ ]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재판정으로서의 완전한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적집행방법(예컨대 신뢰마크, 사업자 네거티브 평가제도)이 더 효율적이어서 중재판정이 갖는 완전한 집행력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award’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에 반대가 있었다.<sup>11)</sup>

통상 ‘decision’과 ‘award’라는 개념이 내용상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도 문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award’의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내지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처럼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그에 반하여 ‘decision’의 경우 중립적 제3자가 일정한 입장을 결정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서 최종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지만, 예컨대 문서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는 것처럼 절차 중간에서 하는 결정도 포함된다. 본 절차의 경우 촉진된 합의(facilitated settlement)단계에서는 당사자들이 중립적 제3자의 조력을 받지만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중립적 제3자의 결정 내지 판정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가 존재 내지 부존재하게 될 뿐이고, 최종적인 결정과 판정은 arbitration 단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의미로는 ‘award’ 및 ‘decision’이라는 개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이므로 용어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논의 끝에 큰 반대도 있었지만, 중재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awar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sup>12)</sup>

## ② 중재판정의 기한

중재판정의 기한을 7역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7역일을 연장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몇몇 대표들은 본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소액·대량의 분쟁이므로 7일로 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1회의 7역일의 기한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7역일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1회의 연장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주장되었다.<sup>13)</sup> 논의 끝에 1회 연장을 가능한 것

11)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26-27 (A/CN.9/762).

12)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28-30 (A/CN.9/762).

으로 잠정합의를 보았다.<sup>14)</sup>

## 2) 초안 제9조 제2항

### ① 간략한 이유(brief ground)의 제시 여부

중재판정에 간략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지에 관련하여 당사자가 결정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점, 중립적 제3자의 공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 UNCITRAL 중재 규칙 제34조 제3항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간단한 이유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다.<sup>15)</sup>

### ② 중재지와 당사자의 신상정보의 포함 여부

중재판정에 중재판정의 날짜 외에도 중재지와 당사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주장되었다. 중재지와 관련하여 중재지 결정의 문제와 중재지의 기록의 문제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본 규정상으로는 중재지의 기록 여부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중재지 결정의 문제는 다른 곳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재지의 기록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sup>16)</sup> 그에 반하여 당사자의 성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성명을 중재판정에 담는 것은 자명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며, 오히려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이례적이며 현재의 UNCITRAL 규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sup>17)</sup>

### ③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며,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해 서명되고”라는 표현의 문제 규정의 표현 중 “서면” 및 “서명”이 전자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

13) 우리 중재규칙 제59조에서는 신속한 절차를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심리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31-37 (A/CN.9/762).

15)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38-39 (A/CN.9/762). 중재판단에 이유를 요구하는 것은 대륙법의 전통이고, 그것을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커먼로(common law)의 전통이라고 한다. 중재판정의 이유 기재 여부, 기재 정도에 관하여 정선주, “중재판정의 이유 기재 -대법 1998. 7. 14. 선고, 98다642 판결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8권, 한국중재학회, 1998. 12. p. 206-219

16) 우리 중재법 제32조 제1문에서도 중재판정에 작성날짜와 중재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40-43 (A/CN.9/762).

었다. 즉 이 규정은 기존의 UNCITRAL 규정을 기초로 한 것인데,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의한 방식이 규정상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규정에서 ‘서면’은 전자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서명’은 정의하고 있지 않아서 전자서명이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UNCITRAL 규범에 의거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개념정의를 두기로 하였다.<sup>18)</sup>

#### ④ 중재판정의 출판 내지 공개 인정여부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편집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재판정을 출판 내지 공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는 논거로는 (i) 중재판정의 출판 내지 공개를 통하여 ODR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중재판정의 오류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sup>19)</sup> (ii) 이러한 종류의 정보는 (소비자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비슷한 분쟁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 (iii) 중재의 최근 경향은 투명성을 고양시키는 쪽이어서 UNCITRAL 실무작업반 III의 경우, 스포츠와 관련된 중재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중재판정의 출판 내지 공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의 출판 내지 공개를 가능하도록 조항을 구성하면 좋을 것이라는 추가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20)</sup>

이에 반하여 원칙적 출판 내지 공개는 타당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되었다.<sup>21)</sup> 중재판정의 출판 내지 공개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거로는 (i) 중재의 중재절차는 비밀성을 대전제로 하고 있고,<sup>22)</sup> 투자자-국가 간 중재와 반도핑 스포츠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중재에서 투명

18)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44 (A/CN.9/762).

19) 우리 학설 중에서도 국제투자중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일체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지만 적어도 공익과 관련된 중재절차에 대해서 중재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관여할 수 있고 공익과 관련되는 한도에서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판정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강병근, “국제투자중재상 공익보호와 투명성 제고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5. 8. pp. 11-33).

20)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45 (A/CN.9/762).

21) 중재절차의 비공개성이 갖는 장점에 대한 서술로서 오창석, “국제거래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의 국제상사중재의 유용성”, 『법학논총』, 제16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8. pp. 287-323

22) 중재판정부내의 합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합의비밀의 원칙으로서, 이 원칙은 이미 각국의 중재실무에서 확립되어 있다는 견해로서 오창석,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방법”, 『법학논총』, 제28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7. pp. 111-134. 2011년 개정 프랑스 중재법은 국제중재에 있어서의 비밀유지 준수 의무가 폐지되었다고 한다(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 안

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은 소액의 온라인 분쟁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점, (ii) 중재판정의 출판 내지 공개를 허용하게 되면 기밀 정보의 보호 등과 같은 다수의 복잡한 추가규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 (iii) 본 ODR 절차에서 예상되는 온라인 중재의 양을 감안한다면 모든 중재판정을 출판 내지 공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iv) 출판 내지 공개를 통한 감독 메커니즘은 ODR 제공자가 제공하는 통계와 데이터의 집적을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sup>23)</sup>

이러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UCITRAL 중재규칙 제34조 제5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본 규정을 [ ]에 두고 추후에 다시 이 쟁점을 논의하기로 하였다.<sup>24)</sup>

### 3) 초안 제9조 제3항

본 규정이 중재판정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표현에 대하여 논란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즉, “판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을 구속할 것이다.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사전중재합의를 통하여 ODR절차에 참가하게 된 경우 법원으로 갈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이러한 소비자의 법정으로 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갖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 중재판정은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앞의 규정 뒤에 추가로 이러한 문구가 제안되었다. 사전중재합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규정의 내용은 [ ]에 두기로 하고 그 적절한 위치는 추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하였다.<sup>25)</sup>

### 4) 초안 제9조 제4항

제시된 초안은 기존의 중재법에서 고려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및 추가판정을 모두 담고 있지 못하다.<sup>26)</sup> 이에 따라서 판정의 해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건형·유병욱, “2011 프랑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제중재법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15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 11. pp. 115-121).

23)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46 (A/CN.9/762).

24)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47 (A/CN.9/762).

25)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48-52 (A/CN.9/762).

26) 우리 중재법 제34조 제1항의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오산(誤算)·오기(誤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 2.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야 하므로 UNCITRAL 중재규칙 제37조를 참조하여 조문을 추가로 만들 것이 요구되었다. 다만 본 항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제9조bis에 본 규정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 ]로 처리하여 추후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나아가 제4항의 시간제한에 관하여, 특히 그 조항이 반드시 마감일을 규정해야 하는지와 그 기간, 그리고 중립적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마감일을 연장하는 일반 조항이 규칙 내에 있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실무작업반은 사무국에 다음 회의에서 규칙의 다른 시간제한들의 목록을 요청하고 동시에 장래의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마감일의 수정이나 연장에 대한 일반 조항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sup>27)</sup>

#### 5) 초안 제9조 제5항

본 규정은 기본적으로 초안 규칙은, 양자 모두 계약상의 용어 및 적용 가능한 무역 관행에 근거한 분쟁의 결정(determination)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 UNCITRAL 중재규칙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과 가능한 한 일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안되었다. 즉, 최소한의 결정근거가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결정근거로 계약의 문구 및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정당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상인간의 상거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관습을 기초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소비자분쟁의 경우에는 상관습을 기초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몇몇의 대표단은 본 항이 기본적으로 준거법의 문제를 다루는 조항이므로 준거법의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여기서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실체법적 원리에 이 문제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sup>28)</sup> 이러한 논란 끝에 본 규정은 [ ]에 두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sup>29)</sup>

쟁점에 대한 해석 그리고 3.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7)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53-57 (A/CN.9/762).

28) 실제로 우리 중재법의 경우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을 실체에 적용될 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9조 제4항).

29)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58-61 (A/CN.9/762).

## 6) 초안 제9조 제6항

입증책임에 관한 본 규정도 초안처럼 기본적으로 UNCITRAL 중재규칙 제27조와 최대한 유사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구매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므로 입증이 매우 쉬울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에 반하여 물건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예시가 제시되었다. 입증에 관한 UCITRAL의 기존 규정은 상인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률가의 조력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는 소비자들이 입증을 해야 한다는 측면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분쟁유형에 따라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지지를 얻었다. 당사자가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순조롭거나 쉽게 이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조항이 규칙에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증책임을 전환은 이러한 것이 요구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규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30)</sup> 실제로 우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동법 제15조 제6항). 본 논의에서 우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의 끝에 본 조항은 입증책임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현재의 위치는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규정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나아가 입증책임을 전환에 관한 규정을 [ ]에 두고 추후 논의에서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sup>31)</sup>

### Ⅲ. ODR 절차의 언어와 그 확정방법

#### 1. 분쟁해결절차 언어 확정의 어려운 요소

국제전자상거래의 경우 당사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30)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63-66 (A/CN.9/762).

31)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67 (A/CN.9/762).

러한 측면에서 ODR 절차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sup>32)</sup>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언어 내지 당사자가 합의한 언어이다. 그런데 언어결정의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 (1) 쇼핑몰 웹사이트의 구성과 계약체결언어와 분쟁해결언어의 구분

통상 인터넷의 쇼핑몰은 다양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전자상거래를 지향하는 쇼핑몰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기본 페이지로 구성하고 있고 해당 언어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언어로 쇼핑몰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당사자가 자국의 언어로 쇼핑 및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IP주소를 인식하여 자동적으로 언어가 바뀌어서 소비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주소로 쇼핑몰의 언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에게 편의적인 방법으로 언어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사용되어야 할 객관적인 “거래에 사용된 언어”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33)</sup>

소비자의 언어로 웹사이트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영어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거래에 사용된 언어를 기초로 하여 ODR절차를 구성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쉬운 내용과 그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어로 계약체결 과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으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용어가 등장하는 등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또한 주장해야 하므로 영어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약 내지 거래상의 언어를 분쟁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sup>34)</sup>

#### (2) ODR제공자의 언어서비스와 그 한계

물론 ODR제공자가 ODR절차를 간명하게 구성하고 언어 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면 언어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ODR제공자가 이러한

32) 한삼인·정창보, “ODR의 국내·외 동향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36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6. pp. 430-431

33) A/CN.9/WG.III/WP.117/Add.1 para. 54.

34) A/CN.9/WG.III/WP.117/Add.1 para. 55.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언어를 서비스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언어의 문제는 아직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 (3) 분쟁해결 언어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합의의 문제

그 다음으로 생각할 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언어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약관상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언어를 선택하는 약관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당사자의 합의로서 언어가 결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사전언어합의를 약관규정으로 둔 경우에 이러한 약관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언어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약관을 통한 사전언어합의를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은 약관규제법을 두어 이러한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sup>35)</sup> 또한 사전중재조항을 무효로 규정하는 것처럼 사전언어합의를 무효로 보는 실정법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약관을 통한 사전언어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거나, 이러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립적 제3자가 절차의 언어를 결정할 필요성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 2. 제26차 실무작업반에서의 논의

### (1) 초안 제10조 원안

초안 제10조(절차상의 언어)

“[ODR절차는 분쟁이 있는 거래에 사용되었던 언어, [아니면 당사자들에 의해 동의된 다른 언어로 수행되어야 한다.]]중립적 제3자의 다른 결정이 없으면[[양당사자가 절차에 사용될 언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2) 실무작업반 논의사항

기본적으로 각국의 대표단에서는 언어와 관련된 위의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는 점

35) 우광명, “중국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실행과 법적 문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6권 제2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6. 9. pp. 237-257

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절차언어를 위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 논의의 출발점은 UNCITRAL 중재규칙과 모델법상의 규정이 논의를 위한 좋은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인이 절차상의 언어를 결정하게 된다.<sup>36)</sup> 이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기존의 중재법은 상사중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언어에 관한 합의를 협상을 통하여 별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반하여 소비자중재의 경우 약관에 이와 관련된 언어조항에 있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언어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또한 상사중재의 경우 당사자가 상인이라는 측면에서 번역비용 등을 당사자가 부담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경우에는 비싼 번역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소액의 피해를 구제받을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중재법 규정은 여기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37)</sup>

국제거래에서 소비자의 언어결정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첫째 방안은 중재인에게 언어의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이전에 제안되었던 다음과 같은 조항이 초안 제10조 내지 중립적 제3자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이 제안되었다. 즉,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ODR제공자는 그 시스템, 규칙과 중립적 제3자에게 이러한 차이점을 민감하게 다루도록 구성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sup>38)</sup> 둘째 방안은 주석 내지 가이드라인 또는 두 곳 모두에 당사자들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장려된다는 점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방안은 언어에 관한 분쟁 전의 합의 보다는 분쟁 후의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언어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36) 중재법 제23조는 중재판정 작성을 포함하여 중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게 하는 한편, 이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하고 있다. 국내중재규칙 제50조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한국어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요구가 있거나 또는 중재인 중에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있을 때는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는 중재판정문은 모두 이를 정본으로 한다. 그러나 국문과 영문의 중재판정문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한국어에 의하여 해석한다고 보고 있다. 그에 반하여 국제중재규칙 제24조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을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계약 언어를 비롯한 모든 관련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중재 언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적인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중재규칙이 2007년에 제정되기 전에 중재규칙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로 김상찬, "중재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 중재법의 과제", 「법학연구」, 제15집, 한국법학회, 2004. 6. p. 487.

37)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69-70 (A/CN.9/762).

38) A/CN.9/WG.III/WP.117/Add.1 para. 59.

사전합의는 온라인상 약관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sup>39)</sup>

당사자들이 절차상의 언어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 중립적 제3자가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대표단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을 중립적 제3자가 무시하고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구속력 있는 계약을 무시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중립적 제3자가 결정한 언어를 당사자들이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sup>40)</sup>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지연과 지출을 피하기 위하여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중립적 제3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초안 제7조 제1항bis)이 언어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에 반하여 몇몇의 대표단은 초안 제10조에 명시적으로 언어를 결정하는 중립적 제3자의 권한을 규정하기를 원하였다.

절차상 언어의 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안이 제안되면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sup>41)</sup>

초안 제10조(절차상의 언어)<sup>42)</sup>

- (1) ODR 절차는 ODR 절차의 개시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언어 또는 언어들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The ODR proceedings shall be conducted in the language or languages agreed upon by the parties at the commencement of the ODR proceedings).
- (2) 당사자가 ODR 절차의 언어 또는 언어들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중립적 제3자가 2조에 규정된 당사자의 적법절차권을 고려하여 ODR 절차의 언어 또는 언어들을 정한다(In the event the parties do not agree on the language or languages of proceedings, the language or languages of proceedings shall be determined by the neutral, taking into account the parties' due process rights under Article 2).

39)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71 (A/CN.9/762).

40)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72-73 (A/CN.9/762).

41)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74 (A/CN.9/762).

42)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 (3) 언어결정은 ODR절차의 모든 통신에 적용된다(The determination shall apply to all communications in the course of the ODR proceedings).
- (4)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ODR 제공자는 그 체계, 규칙과 중립적 제3자가 이러한 차이에 유의하여 이에 관한 당사자의 수요를 다룰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An ODR provider dealing with parties using different languages shall ensure that its systems, rules and neutrals are sensitive to these differences and shall put in place mechanisms to address the needs of parties in this regard).

본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사후적인 언어 합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중립적 제3자가 언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모든 의사소통은 그렇게 정해진 언어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언어로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하여도 너무 상세하다는 반론이 있는 등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조문을 [ ]에 두고 추후에 이 안을 기초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sup>43)</sup>

#### IV. 논의의 정리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26차 실무작업반회의를 통하여 소비자중재에 대하여 부정적인 유럽연합 측 국가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더 유연한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전격적으로 중재가 포함되지 않은 절차와 중재가 포함된 절차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중재는 아직 제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실무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변화는 찬성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재가 포함된 절차에서 사전중재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들의 소비자보호를 어떻게 안전하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소비자중재의 경우 왜 집행력 있는 중재판정이 필요한지에 관한 논의도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직도 큰 쟁점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고 많은 논의가, 특히 소비자보호와 중재와 관련하여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개의 조문만 논의된바 있다. 이번 논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75 (A/CN.9/762).

43)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76-78 (A/CN.9/762).

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상사중재를 기반으로 한 UNCITRAL 협약과 모델중재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자중재를 포함한 신속한 절차가 핵심이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시각차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중재적 시각과 새로운 모델에 대한 구축 필요성에 관한 시각의 충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재절차의 대외비를 고수하자는 종래의 의견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중재관정을 출판 내지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의 충돌,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일반원칙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사례의 경우에 입증책임의 전환필요성에 관한 의견의 충돌, 절차언어 선택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대표적인 쟁점들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쟁점들은 한국 대표단 내에서도 완전히 일치된 견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후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제11조-제13조까지 3개 조문만이 남아 있으며 절차규칙과 관련된 조문의 1회독이 끝나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핵심적인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쟁점들이 남아 있으며, 어려운 쟁점은 아직도 [ ]로 처리되어 있어 2회독을 하면서도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에서 전자상거래, ODR, 소비자법, 국제사법 그리고 국제민사소송법, 중재법 등의 복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복합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와 보다 더 적극적인 준비를 통하여 앞으로 있을 UNCITRAL 회의부터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ODR 연구포럼,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VIII - ODR 연구포럼 Report)」, 한국법제연구원, 2011.
- 강병근, “국제투자중재상 공익보호와 투명성 제고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5. 8.
- 김상찬, “중재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 중재법의 과제”, 「법학연구」, 제15집, 한국법학회, 2004. 6.
- 김선광, “전자상거래 분쟁발생시 사이버공간에서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5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 6.
- 김선정, “온라인 상사분쟁해결방법의 법적 과제”, 「경영법률」, 제17집 제1호, 한국경

- 영법률학회, 2006. 10.
- 김윤정, “전자상거래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과 법」, 제2권, 2011.
- 박성용, “소비자분쟁해결에 중재제도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9. 8.
- 손승우,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I] -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동향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손현,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V] - 국내 ODR 규율 동향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손현 · 이병준,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VI] - ODR에 관한 국제규범모델 정립을 위한 제언」,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안건형 · 유병욱, “2011 프랑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제중재법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15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 11.
- 오수근,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IV] - UNCITRAL ODR Working Group 논의 내용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오창석, “국제거래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의 국제상사중재의 유용성”, 「법학논총」, 제16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8.
- 오창석, “중재관정부의 의사결정 방법”, 「법학논총」, 제28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7.
- 우광명, “중국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실행과 법적 문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6권 제2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6. 9.
- 윤우일, “전자상거래분쟁해결을 위한 ODR 활성화를 위한 연구”, 「중앙법학」, 제12권 제4호, 중앙법학회, 2010. 12.
- 이병준,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한국소비자원, 2012. 4.
-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과 ODR를 통한 분쟁해결”, 「중재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2. 8.
-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 분쟁에 대한 온라인 분쟁해결과 중재”, 「중재」, 제338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12.
- 이준호,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II] - CWA ODR 표준화 가이드라인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이지윤,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III)-주요 ODR 시스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이충열 · 이덕무,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조정의 요건과 과제", 「무역학회지」, 제27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2. 12.
- 임천혁 · 박남규, "한국의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7. 5.
- 정선주, "소비자중재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 「법학연구」, 제4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3.
- 정선주, "중재판정의 이유 기재 -대법 1998. 7. 14. 선고, 98다642 판결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8권, 한국중재학회, 1998. 12.
- 최석범, "온라인 ADR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8. 12.
- 함삼인 · 정창보, "ODR의 국내 · 외 동향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36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6.
-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 Louis F. Del Duca, Colin Rule & Zbynek Loebel, "Facilitating Expansion of Cross-Border E-Commerce-Developing a Global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Lessons Derived from Existing ODR Systems - Work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25-2011.
- Michael J. Dennis, "UNCITRAL ODR", 「외법논집」 제36권 제4호, 2012.
-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ty-fourth session(A/66/17).
-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ty-third session (New York, 21 June - 9 July 2010) Meeting records(A/65/17).
-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third session (A/CN.9/721), para. 140,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fourth session (A/CN.9/739).
-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 Abstract

### Discussion and Evaluation in UNCITRAL Regarding Procedural Rules for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 Focus on the Discussion in the 26th Session of Working Group III –

Byung-Jun Lee

Recentl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has made progress toward resolving low value, high volume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At the Working Group's 26th session, two draft procedural rules were addressed. The first discussed the draft of Article 9, entitled "Decision by a neutral party." This is based on the suggestion in 26th session to have a "two track" system of ODR, one including negotiation, facilitated settlement, and arbitration phrases, and the other not including an arbitration phase. The second draft procedural rule, draft Article 10, regards the language of proceedings. In most cases of international e-commerce, the decision of language of an ODR proceeding is a matter of importance, for the language parties could differ from each other. This paper examines several implications of UNCITRAL for Korea, which has unstable ODR system.

**Key Words** : International e-commerce, ODR, UNCITRAL, Draft Procedural Rules, Language of Proceedings